제1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FTA 효과 극대화, 글로벌 투자허브를 위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

2012. 4. 26 (목)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경제상황 인식과 국내투자 중요성 ····· 1

II. 기업의 국내투자 여건 및 정책방향 ····· 3

III. FTA 적극 활용, 글로벌 투자허브 구축 ····· 7

1. 우리 기업의 U턴 지원 대폭 강화 ····· 7

2. 경제자유구역 투자 매력도 강화 ····· 11

3. FTA 효과를 통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14

IV. 기업의 즉각적인 투자 유도 ····· 17

1. 기업의 투자 제약요인 조속 해소 ····· 17

2. 투자심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 완화 ····· 19

V. 미래 신성장동력의 국내정착 강화 ····· 20

1.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촉진 ····· 20

2. 기술혁신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강화 ····· 23

Ⅰ. 경제상황 인식과 기업의 국내투자 중요성

□ **(경제성과와 비전)** 조선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으로 세계 7대 수출국('10), 무역 1조 달러('11) 등 경제성과 달성

○ '15년 국민소득 3만 달러, '20년 2조 달러 경제로 도약 준비 시점

□ **(경제전망)** 올해는 '11년에 이어 3%대 저성장 예상, 유로존·이란 사태 등 글로벌 위기 지속시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화될 우려

○ 세계 GDP 순위는 신흥국(브라질 등)에 밀려 후퇴('02년 11위→'09년 15위) 중이며 경제성장의 저력인 성장잠재력도 급속 저하

* OECD의 주요국 잠재성장률 전망(`10~'15년 → `16~26년) :
(미국) 2.4→2.2%, (일본) 1.0→1.4%, (영국) 1.5→1.9%, (한국) 3.8→2.4%

□ **(성장부양력)** 우리 경제의 비전 실현을 위해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나,

○ **(수출)** 세계경기 영향으로 수출은 상당폭 둔화 불가피('12.1Q 3.0%↑)

* 세계교역증가율(%): (`11)6.9→(`12e)3.8 * 수출증가율(%): (`11)19.6→(`12e)6.7

○ **(민간소비)** 가계부채 급증 등 구조적 문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단기간 내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

* 가계부채(조원) : (`09)779.6 → (`10)846.9 → (`11)912.9

○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제약으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한계

* 재정수지(GDP대비) : (`11예산) △2.0% → (`13목표) 0% (균형재정 달성)

☞ **(기업 투자)** 투자 증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을 견인해 왔던 점을 감안, "기업의 적극 투자"가 믿을 만한 성장부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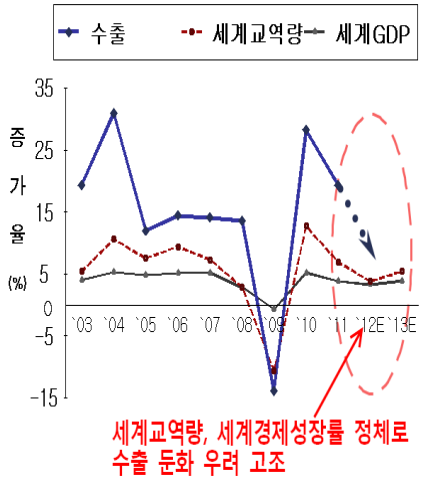
≪ 기업의 투자 중요성 관련 대통령 말씀 ≫

" 각국 정부의 추가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11.11, G20 비즈니스 서밋)

" 기업은 불경기 때 투자해 경기가 회복될 때 바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다" ('11.11, 필리핀 국빈방문)

≪참고 :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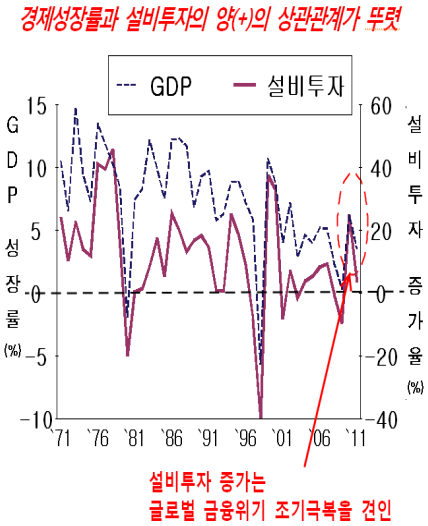
□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수출 둔화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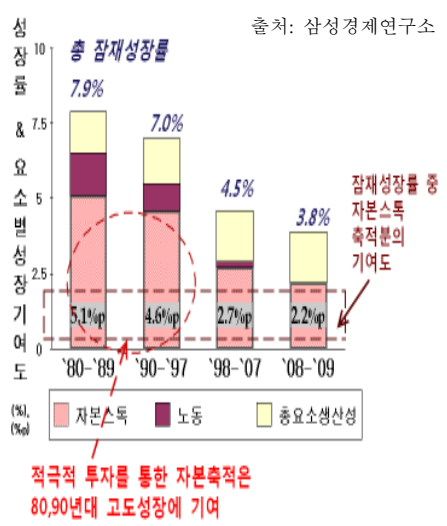
□ 가계부채, 물가불안 등으로 민간소비 진작에도 한계



■ 설비투자 확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



■ 투자를 통한 자본스톡 축적은 미래 성장여력을 강화



Ⅱ. 기업의 국내투자 여건 및 정책방향

1 기업의 국내투자 동향 및 전망

□ **(설비투자)** 설비투자(국내투자의 약 70%)는 '80~'90년대 높은 증가세로 고도성장 견인, '00년대 들어 성장세 지속 둔화

* 설비투자 증가율(%): ('81~'90)12.4 → ('91~'97)8.2 → ('00~'08)5.7 → ('11)3.7

○ '11.하반기 5개월간 (-) 성장,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최근 반등의 요인으로 분석, 긍정기대는 시기상조

* 증가율(%, 전년대비): ('11.8)△2.9 → (10)△10.9 → (11)△2.8 → (12)△1.0 → ('12.2[p])22.0

○ 공장설립 등 설비투자(Greenfield)가 주류(약 80%)인 외국인 투자도 지속 감소(도착기준, '05년 96억불 → '11년 51억불)

○ **(올해 전망)** 정책금융공사는 전년에 비해 설비투자가 2.0% 감소 전망, 30大그룹은 힘든 여건에서도 92조원(8.8%↑) 투자 의지

* 설비투자 조사(정책금융공사): '11년 135조원 → '12년[e] 132조원 (2.0%↓)

□ **(R&D투자)** 지난 10년간 기업 R&D는 연평균 12.2%로 증가, 금융위기에도 8~9%대의 높은 증가율 유지한 반면,

* R&D 증가율(전년대비, %): ('06)14.5→('08)8.8→('09)9.3→('10)16.8→('11)8.2

○ 국가(정부+기업) R&D에서 기업 R&D 비중 감소('06: 76% → '10: 72%)

○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증가율 크게 둔화

* 벤처: ('06)34.8 → ('10)0.8 * 中企: ('06)25.7 → ('10)8.1 * 대기업: ('06)9.4 → ('10)21.2

○ **(올해 전망)** 경기 위축에도 민간 R&D의 규모 축소는 없을 전망, 30大그룹은 26조원(16.9%↑) 투자 계획

* R&D투자 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1년 38조원 → '12년[e] 41조원(8.4%↑)

2 기업의 국내투자 위축 영향 요인

□ **(단기적 측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 금년 총·대선 정치 변수 등이 정책 예측가능성을 저하, 기업의 리스크 부담 가중

* 기업체감경기(한은) : ('08.12 금융위기) 52 → ('10.5 경기회복) 97 → ('12.3) 81

□ **(구조적 측면)** 기업의 보수적 경영 확산,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제한

○ **(보수적 경영문화)** 기업과 금융권은 외환위기의 경험·학습으로 성장성보다 불확실성에 대비 단기 수익성, 안정성과 유동성 중시

* (기업)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 R&D투자 보다 기술획득이 용이한 M&A 선호
(금융권) 기업대출 축소 → 중소기업의 투자 자금난 초래

현금보유비중(%)	차입의존도(%)	기업대출(%)	가계대출(%)
('98)12.9 → ('10)16.0	('98)48.5 → ('10)28.2	('98)72.3 → ('09)57.1	('98)27.7 → ('09)42.9

○ **(해외투자 확대)** 글로벌화 전략, 생산비용 절감(中企), 자원개발 등을 위한 생산시설 해외 이전·설립과 해외 M&A 급증

* 해외투자(억불, 송금기준): ('00)52 → ('05)72 → ('06)117→ ('07)222 → ('11)256

- 신재생E 등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조차 대규모 해외투자 추세

□ **(제도적 측면)** 현 정부 들어 기업환경개선, 투자활성화 등 대책을 수차례 수립, 출총제 등 투자저해 규제가 상당부분 해소

*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World Bank): ('08) 23위 → ('10) 16위 → ('11) 8위

○ 그럼에도 기업투자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존재, 또한 공장 신증설시 불합리한 입지규제 등도 잔존하여 효과 반감

3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정책 방향 〉

◆ 국내·외 투자동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기업은 투자 의지는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와 투자시기를 조율 중으로 판단

* 그간 투자 둔화세에도 '10년 6.2% 경제성장 달성시 기업은 설비투자 25%, R&D 16.8% 확대 등 적극 투자 실천 ⇒ 금융위기 조기 극복

◆ 우리 기업이 자원개발 등 불가피한 해외투자 이외는 국내 투자를 선호하도록 인센티브 등 투자여건 조성

≪ 대통령 말씀 ≫

" 기업들이 국내 보다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경제성이 없는데 국내 투자를 강요할 수만은 없음. 기업이 국내투자를 하고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함"

【1】 FTA 이점을 적극 활용, 글로벌 투자 허브(Hub)로 도약

○ 국내 기업, 해외진출 우리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총력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강화

【2】 투자현안을 갖고 있는 기업의 즉시 투자 유도

○ 기업의 투자제약 요인 조속히 해소, 체감 불확실성 완화

【3】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국내정착 유도·강화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

* 기존 주력산업(Cash Cow)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투자 유도

○ 기술혁신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지속 강화

≪참고 : 정책과제 및 비전≫

비전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2020년 2조 달러 경제 실현

전망

◇ 중장기적 성장동력 강화

◇ 단기적 경기 활력 제고

·총 투자(조원): (11년) 173 ⇒ (12년) 178 (2.9% ↑)

설비투자: (11년) 135 ⇒ (12년) 137 (1.3% ↑)

R&D투자: (11년) 38 ⇒ (12년) 41 (8.5% ↑)

* 전망 출처: 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연구원

정책과제

FTA 적극 활용, 글로벌 투자허브 구축	1 우리 기업의 U턴 지원 대폭 강화 2 경제자유구역 투자 매력도 강화 3 FTA효과를 통한 외투 적극 유치
기업의 즉각적인 투자 유도	1 기업의 투자제약 요인 조속 해소 2 정책 불확실성 완화
신성장동력의 국내정착 강화	1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촉진 2 기술혁신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강화

Ⅲ. FTA 적극 활용, 글로벌 투자허브 구축

1 우리 기업의 U턴 지원 대폭 강화

◇ **(U턴 동향)** FTA 발효, 해외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 증가 전망

* 중국은 新노동법 개정, 외투기업 혜택 축소,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시행
* 해외진출 240개사 중 12.5%(30개사)가 U턴 의향표명('12.1, KOTRA·대한상의 조사)

◇ **(U턴 애로)** 설비 국내이전시 관세부담, 국내 高임대료·인건비, 합법적 현지청산 곤란 등이 큰 애로요인

관세부담	인력활용 문제	임대료 부담
·해외진출시 현지국가로부터 받은 관세혜택 반납 ·설비 국내이전시 평균 8% 관세 납부	·현행 비자고용허가 제도로는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 곤란	·국내 지방 임대료의 경우 중국의 3~4배 수준

◇ **(현행 제도)** 세제·입지·인력 지원 제도가 있으나, U턴 기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적극적 U턴 수요 창출에 인센티브 부족

* **(세제)** 국외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입지) 장기 임대 산업용지 우선권 부여
 (인력) 내국인 고용인원과 동일한 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50인 한도)

* 현지 완전 청산 후 복귀형태의 U턴보다는 현지 생산물량의 단계적 감축, 부분복귀 등이 U턴 수요의 대다수 차지

* 조특법상 다양한 U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

◇ **(해외 사례)** 미국, 대만 등이 자국내 U턴 적극 유치 지원

* (미국) 이전비용의 20% 보조,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추진
 – U턴 후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을 이전비용의 20% 한도에서 先지급
* (대만) U턴 투자전용 융자지원, U턴 투자기업의 기술향상 지원 등

가. U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방향

□ U턴기업은 외투기업과 유사한 고용창출, 투자활성화, 지역경제기여 효과 측면을 고려, 기존 지원책을 대폭 개선·보강

○ U턴시 중요한 장애요인인 입지·인력·세제 분야 지원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비수도권 복귀기업에 한정하여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에 준하여 지원

○ 특정 업종의 다수 기업이 "집단 U턴"시, 해당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혜택도 부여

나. 구체적 U턴 지원방안

□ **(지원대상 확대)** 정책 수요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U턴기업의 정의·범위를 확대, 다양한 유형의 U턴 지원

U턴 정의/범위	·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①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②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현지 생산시설을 매각 또는 이전하거나 현지 생산물량을 감축,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하는 기업

○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포함

□ **U턴 기업 지원 강화내용**

○ **(세제)** 조특법상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일몰시한 연장 (12년→15년)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현지 생산시설 유지, 부분매각·이전도 포함

- 현지 생산시설 폐쇄·양도까지 유예기간 연장(2년 → 3~4년)

-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 위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 관세 감면의 경우 완전 매각·청산 후 복귀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부분매각·이전의 경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대책에 미포함

○ **(입지)** 신규 경자구역내(황해·새만금) U턴기업 전용용지 지정 및 U턴기업 전용산단 조성·입주 우선권 부여

- 입주지역에 따라 분양가·임대료 등 감면*

 * 현행 비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 분양가·임대료의 15~45% 보조

※ 수도권 복귀기업은 산단입주 우선권 또는 필요시 전용산단 조성 및 입주 우선권만 부여

○ **(인력)** 국내 투자기간 동안 신규고용시 1인당 월60만원 이하(최대 6개월)의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시 그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 사증(E-7)"의 제한적 허용

 * U턴기업의 투자금액·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10~2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

○ **(현금)**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 지원*

 * 현행 비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의 최대 15%까지 지원

○ **(수출금융)** U턴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2배이내) 및 보증료 최대 20% 할인(무역보험공사)

○ **(집단 U턴)** 전용산업단지, R&D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산업발전계획과 연계, 해당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가 지원

 * 섬유, 신발 등 해외진출이 활발한 업종 대상으로 집단 U턴 수요 발굴
 * 지경부내 TF 구성, 집단 U턴 수요 발굴 및 업종별 특화 지원정책 수립

< U턴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구 분	유턴 유형		법인·소득세		관세 (신규)	보조금 (신규)	입지 (강화)
	해외현지	국내	현행	개편안			
국내 생산시설 無	①완전매각/청산	신설	○	○	○	○	○
	②현지 생산시설 유지/부분매각·이전	신설	×	○	×	○	○
국내 생산시설 有	③완전매각/청산	신설	○	○	○	○	○
		증설	○	○	○	○	○
	④현지 생산물량 감축 (부분매각·이전*)	신설	×	×	×	○	○
		증설	×	×	×	○	○

* 세제지원은 대기업 제외
* 개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60억원 한도 지원

□ **U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원스톱 지원 강화**

○ U턴을 종합 지원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개편(KOTRA 무역관내), One-Stop 서비스 제공(KOTRA)

 * 산단공,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U턴수요발굴→현지청산→국내입지선정」 등 국내복귀 전단계 일괄지원

 * '13년까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대(13개소→20개소), 법무부의 「국제투자법률 자문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다. 체계적·안정적 지원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비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해 연내 우선 지원

□ U턴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 제정

 * (예시) U턴기업의 정의, 지원체계, 인력·입지 등 지원내용 전반사항 규정

2 경제자유구역 투자 매력도 강화

◇ 외투기업 유치 및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달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운영 중

* '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구역 지정 이후, '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구역 등 총 6개 구역 지정

* 6개 구역 총 85개 단위지구, 437km^2 규모(여의도 면적의 약 51배)

○ 총 57조원 투입, 전체 85개 단위지구 중 48개(56%)가 개발완료 또는 진행 중이나 경제특구로서의 매력 미확보, 투자 저조

◇ **(외국인투자)** '04~'11년간 총 42.5억불(FDI 신고기준) 유치,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액의 4.4% 차지

○ '09년 이후 증가세이나, 아직 개발초기로 외국인 투자 미미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금액(억$) (비중*, %)	1.2 (0.9)	5.8 (5.0)	1.3 (1.2)	3.1 (3.0)	2.3 (2.4)	7.9 (6.9)	9.5 (7.2)	11.5 (8.4)	42.5 (4.4)

* 국내 전체 외투유치 중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가 차지하는 비중(%)

○ '20년 기업유치 목표 대비 국내기업은 32.0%, 외투기업은 22.9% 수준

* '11년말 현재 국내기업 1,915개사, 외투기업 141개사 입주

○ 국제학교(2개), 해외 명문대(3개) 등 외국 교육기관*은 유치, 아직까지 외국 의료기관 유치는 全無

* (인천) 채드윅국제학교, 뉴욕주립대, (대구·경북) 대구국제학교, (광양만) 네덜란드 국제물류대 등

가. 외국인 정주 여건(교육 및 의료) 개선

□ **(외국교육기관)** 외국대학 유치 및 설립초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외국대학의 설립준비비·초기운영비 지원기준 개선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지경부 고시) 개정

○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및 다수의 외국대학 유치를 본격화하여 공동캠퍼스 조성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트대 학부과정 개교 예정('13년)

□ **(외국병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요건과 개설허가 절차 등 마련

* 경자법 시행령: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고용 비율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위임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령: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운영 참여 및 외국면허·의사비율 등 세부규정 마련·시행 예정

나. 대형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전심사제 도입

※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 카지노 포함), 외국병원 등 장기간 대규모 투자시 건물 완공 후 허가는 불확실성이 커 사업초기에 허가 담보 우선 필요

□ **(복합리조트* 등)** 호텔 등 대규모 설비투자의 선행 없이 일정 기간 내 구비를 전제로 허가 신청하는 사전심사제 도입

*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여가공간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 **(외국병원)** 경자구역법상 외국병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

○ '민원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제 규정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 통보

다.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경자구역 개발에 민간 시행사의 참여 활성화 및 개발지연 최소화를 위해 타 제도와의 형평성 고려, 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 기업도시 등 유사 개발사업 수준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제2항

현 행	개 선
① 신용평가(BBB이상), ② 자기자본(총사업비 10% or 총매출액의 30%), ③ 부채비율 1.5배 미만, ④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등 4가지 모두 충족	·영리법인: 신용평가+2개요건 충족 ·비영리법인: 경자위 심의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사업참여

라. 경자구역 환지개발* 방식 허용

※ 환지방식 개발: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변동 없이 舊토지를 개발하여 新토지에 종전의 권리 부여

□ 총사업비의 50~60%를 차지하는 토지보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도 허용(현재는 토지매수방식 개발만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마. 경자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 부동산투자이민제: 콘도미니엄, 리조트, 펜션 등 휴양목적 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이상 체류시 영주자격 부여

□ **(적용지역 확대)** 경자구역 전체에 일괄 도입 보다 기반시설, 정주여건, 교통 편리성, 투자유치 가능성 등 감안, 추가 도입 검토

○ **(기준금액 조정)** 국내 경제상황, 투자실적 등을 감안, 외투기준금액 조정여부 신중 검토

○ **(인원기준 완화)**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해 콘도 1실당 분양인원 기준 완화(5인이상→1인)

* 콘도 1실당 분양인원이 5인으로 외국인이 5인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3 FTA 효과를 통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지난해 한·EU FTA 발효후 6개월간('11.7월~12월) EU의 對韓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

○ 최근 들어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對韓 투자 큰 폭 증가

* (미국) 40.6%, (일본) 128.7%, (EU) 37.9%, (중국) 48.5%

< 주요국 對韓 투자(백만불, 증가율%) >

구분	'10	'11	'12	
			1/4 분기	4.19日 누계
미국	1,974 (32.8)	2,372 (20.2)	427 (△8.6)	**667 (40.6)**
일본	2,083 (7.7)	2,289 (9.9)	919 (150.4)	**942 (128.7)**
EU	3,196 (△39.7)	5,032 (57.4)	584 (34.6)	**643 (37.9)**
중국	414 (159.5)	651 (57.2)	96 (47.7)	**107 (48.5)**
기타	5,404 (107.3)	3,330 (△38.4)	320 (△52.4)	648 (△6.1)
전체	13,071 (13.8)	13,674 (4.6)	2,346 (17.0)	**3,007 (42.1)**

< 업종별 對韓 투자(백만불, 증가율%) >

구분	'10	'11	'12	
			1/4 분기	4.19日 누계
제조업	6,658 (78.8)	5,657 (△15.0)	1,480 (88.0)	1.974 (140.8)
서비스업	6,302 (△17.0)	7,270 (15.3)	835 (△30.4)	1,000 (△21.5)
기타	111 (△32.8)	747 (572.1)	32 (69.5)	32 (45.5)
전체	13,071 (13.8)	13,674 (4.6)	2,346 (17.0)	3,007 (42.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한·EU, 한·美 FTA 발효를 외투 유치 확대의 호기로 활용

○ (FTA 체결국) EU·미국에 대한 집중적 IR을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까지 對韓 투자 확대 유도

○ (FTA 미체결국) EU·미국과 교역이 많은 일본·중국 등을 대상으로 관세 인하효과가 큰 분야 및 기업 유치활동 집중

◇ 산업고도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 선별 유치와 함께, 旣진출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최근 5년 증액투자 비중 63.4%)

가. 핵심투자국에 대한 대대적 투자유치 활동

□ **(일본)** 국내 대기업 납품비중이 높거나, FTA 관세인하 효과가 큰 중점유치대상「100대 기업」타겟팅·유치

※ 최근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50%(3억 6700만달러) 급증

○ 일본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투자 선호도가 큰 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 지정

* 기지정된 4개(구미·포항·익산·부산진해) 전용공단은 '12년.말 70%이상 입주가 예상되며 포화 전망

< 부품소재전용공단 현황 및 입주율 전망('12년말) >

구 분	구 미	포 항	익 산	부산·진해	
				남 문	미 음
전용공단 선정	'08.12	'09.7	'09.7	'09.7	
외투지역 지정	'09.3	'09.9	'10.2	'10.9	'11.12
조성면적	246,341㎡	327,240㎡	320,440㎡	71,368㎡	331,910㎡
현재 입주율	27.3%	39.6%	37.5%	46.0%	29%
입주율 전망	**40%**	**100%**	**78.9%**	**100%**	**76%**

○ 수요 대기업·업종협회·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현지 IR 개최, 잠재투자가(200명) 대거 초청하여 현장방문 및 국내 IR 실시*

* IR계획: 일본 현지(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국내(연 5회)

□ **(미국)** IT·지식서비스분야 중심으로 대규모 IR 개최(4·11월)

* 동부(뉴욕) : 선진 금융비즈니스 서비스(컨설팅, 물류 등), 서부(실리콘밸리) : IT, 신산업

□ **(EU)** 제약·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분야의 글로벌기업, 强小기업 대상으로 IR 개최(6월/독일·네덜란드)

□ **(중국)** 해외투자 확대추세를 활용하여 양질의 중국자본 유치

○ 한·중·일 정상회담 연계 IR 개최(5월), 차이나 데스크 확대(3 → 5개), 한·중 투자성공사례 발굴·확산

* 중국 투자가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관광, 지역개발 프로젝트 발굴·제시

나.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 선별 유치

□ **(IT산업)** 스마트·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 기업 유치

○ 외국인투자지역 내 조세감면 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외촉법 및 조특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조세감면 대상에 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한정) 추가

□ **(R&D센터)** 고급인력 고용효과가 큰 글로벌 R&D센터 유치

○ 중점유치 대상 기업*을 집중관리, 미국·독일 등에서 IR 실시(4·6월)

* GE, AMAT, SAP, Bayer, Albermarle, Celgard 등 10대 기업

□ **(서비스)**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관광(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의료(스마트 케어), 게임분야 IR 실시*

* IR 계획: 중국·일본(4·9월), 대만·홍콩·말련(6·11월), 미국·캐나다(10월)

다. 旣진출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적극 유도

□ 「100대 외투기업 전담 관리제」 실시, 외국인투자 홈닥터 증원(7 → 14명)

○ PM(Project Manager)을 1:1로 지정하여 100대 외투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관리, 홈닥터가 외투기업 직접방문하여 고충·법률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외투기업 CEO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증액투자애로 지속 발굴·해소

□ 증액투자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 등에 대하여 외투지역지정,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우선 지원

* 국민경제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외촉법령 개정)

Ⅳ. 기업의 즉각적인 투자 유도

1 기업의 투자 제약요인 조속 해소

◇ 그간 경제단체 건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 적극 발굴, 합리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 중심으로 검토, 해결방안 마련

◇ 투자 걸림돌을 조속 해소, 투자의사가 있는 기업의 투자 실천 유도

가. 「도시광산(금속재활용)」 기업의 설비 증설 제한 완화

□ 폐가전 등에서 희소금속을 회수, 산업자원으로 재공급하는 도시광산(금속재활용) 기업의 재활용시설 증설 요건 완화

※ 금속재활용 기업의 재활용시설은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시 허가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 기업의 재량범위를 늘려 희소금속 수급에 적기 대응하도록 증설 허가기준을 재활용 용량의 3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개선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희소금속은 첨단산업의 필수자원으로 수요 급증, 그러나 중국 등 수출국 통제로 희소금속 확보가 어려워 도시광산 활성화 필요

나. 산업단지내 지식서비스업종 입주 범위 확대

□ 지식서비스업종이 급속히 다양·전문화, 산단내 제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업종은 산단(산업시설구역) 입주 추가 허용

※ 출판, 디자인, 포장, 교육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서비스업종에 한해 산업단지內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시급한 입주수요 있는 지식서비스업종을 파악, 제조업과의 산업연관성, 고용·투자 효과 등 분석, 허용범위 마련(산집법 시행령 개정)

* 공학·인문사회과학 R&D업 등 허용여부 검토

다. 수도권내 대기업 임차공장 이전 허용

□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기존 임차공장이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지역에서 이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은 중소기업의 공장만 이전·설립 허용(산집법 시행령)

○ 기반 인프라가 구비된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용이성, 기존의 인력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유지·활용성 등 측면을 적극 고려

- 이전 허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산집법 시행령 개정 검토

* 자연보전권역의 타 개발사업 수요에 미칠 영향 최소화 등

라. IT서비스기업의 ESCO 진입 허용

*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IT기술 활용한 ESCO 신사업 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현행 규정상 특정분야에 편중된 현행 ESCO 등록요건 보완

※ ESCO 등록요건은 열, 전기 관련 기술인력·장비 보유 기업으로 한정(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30조제2항)

○ 현행 요건에 스마트계측, 센서 관련 기술인력, 시스템 개발 인력과 관련 장비 보유 조건 추가

* 등록요건 개정안(예시): (장비관련) 디지털 계측기(유/무선), 에너지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인력)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사 등 추가

2 투자심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 완화

◇ 정치·정책 향방에 대한 불투명성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을 가속화하므로 정책 일관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

□ 총선·대선 등에 따른 정책혼선 방지를 위해 경제정책 기조 일관성 유지 및 선거 전·후로 노사불안 적극 방지

○ 출총제 부활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과 노사문화 선진화 저해요인에 대해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기조 지속 견지

○ 정치일정을 활용한 노동계의 노조법 개정 요구,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 공조 대응

□ 정부의 적극 입법 추진에도 금번 국회 통과가 어려운 기업 투자 관련 입법안(국회 계류중)은 19대 국회 개원 후 연내 재입법 추진

< 국회 계류중 대표적인 정부입법안 >

법률명	주요내용	현재상황	소관부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10.8)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환노위	환경부
관광진흥법('11.6)	특정 관광숙박시설의 학교보건법 적용 예외 인정	문방위	문광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11)	투자은행 활성화 등	정무위	금융위
의료법('10.4)	원격진료 허용, U-헬스 활성화	복지위	복지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08.10)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기재위	기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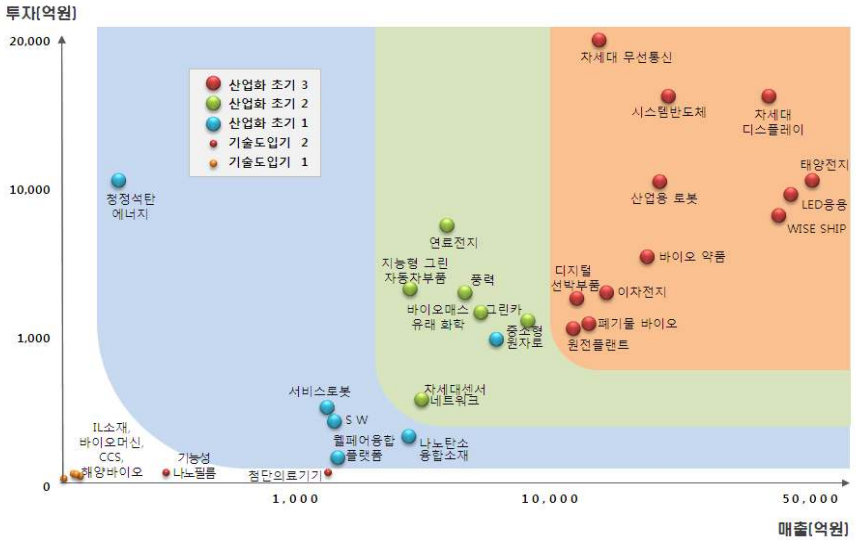
V. 미래 신성장동력의 국내정착 강화

1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촉진

◇ 지난 3년간('09~'11)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결과, 민간 기업은 총 62조원 투자* 실행(정부 8.8조원), 약 80%가 산업화 단계 진입

* 신재생에너지, IT융합, LED, 방송통신 등 4대 분야에 투자 편중(78%)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중 31개 세부분야 대상(1,153개사) 조사분석(산업연구원)

발전단계			신성장분야
기술도입기		시장 미형성, R&D투자 집중	CO_2 포집, 첨단의료기기 등 6개 (19%)
산업화 초기	1기	신제품 출시, 시장형성 초기	서비스로봇, 나노탄소 등 7개 (23%)
	2기	시장규모 성장	풍력, 연료전지, 지능형차 등 6개 (19%)
	3기	시장주도 기업 등장, 수출확대	LED, 태양전지, 시스템반도체 등 12개 (39%)



◇ 신성장동력의 국내 착근을 위해 입지·환경·세제 등 투자 애로를 지속 발굴·해결, 제2의 반도체·조선산업으로 집중 육성

가. 신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투자 애로 적극 해결

1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 설치 허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개정, 주유 취급소내 설치 허용시설에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명시

＊ 전기차 충전기, 완속충전시 장기주차 차량제어·관리 위한 주차시스템 등

2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업체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치제도* 도입과 지원방안 마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과 데이터 등을 임치기관이 이중화 보호·보관, 서비스 중단시 임치기관이 서비스 한시적 수행

○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글로벌 기준과 상이한 법제도·관행을 지속 개선

3 풍력발전 확산 저해요인 해소

○ **(소음기준)** 풍력발전 유발 소음(저주파 영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주파 소음 관리지침 마련

＊ 저주파 영역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행규칙 개정 등 여부는 추후 판단

○ **(실증단지)** 5MW급 대형 풍력터빈의 성능제고와 수출 강화 위해 제품개발 후 성능평가, 운전이력 확보 위한 실증시험장 추가 조성 검토

＊ 세계 해상풍력시장 전망(누적): 3.5GW('10)→55GW('20)→100GW('30)

4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신속 지원

○ 막대한 투자로 개발된 융합 신제품의 적기 출시를 위해 적합성인증 제도 활성화 등 규제 신속 완화

＊ 신규 개발한 융합신제품은 기존 법령상 적합한 기준이 없어 인허가 지연

- 안전성 등 검토를 거쳐 적합성인증 신청 이후 6개월 내 인증 처리

나. 녹색·신성장 산업에 대한 민·관 투자 확대

□ **(정부)** 녹색·신성장 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공공·민간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사업 확대('11년 2조원 → '12년 2.1조원)

○ **(공공·민간 보급)**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로봇 등 신시장 위주로 보급 확산

＊ 신축·이전 공공기관의 LED조명 사용 의무화('12.2) 등

- 안정적인 전력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조기 정착을 위한 핵심기기(스마트미터) 보급도 확대(한국전력)

＊ 보급계획(누계): ('12) 105만호, 6% → ('14) 530만호, 29% → ('16) 1,000만호, 55% → ('20) 1,800만호, 100%

○ **(기반시설 구축)** 연료전지, 로봇, 지능형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수요기업 지원

＊ 로봇 클러스터 조성('12~'16, 민관 2,328억원): 로봇협동화팩토리, 기술혁신센터 구축 등

□ **(민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등에 민간기업, 공기업의 설비투자* 확대('11년 1.2조원 → '12년 2조원)

＊ 주로 고효율설비 교체, 공정 효율개선, 연료전환 및 폐열회수 설비 등

2 기술혁신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성장동력 강화 위해 기술력이 탁월한 중소·벤처기업을 창출하고, R&D를 통한 기술혁신과 상용화 지원을 강화하여

○ 기술창업 ⇒ R&D투자 ⇒ 사업화 ⇒ 설비투자(양산)로 연결되는 기술혁신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강화

가. 기술창업과 R&D 투자 활성화

□ **(창업 부담 완화)**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위해 창업기업(제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시한을 5년 연장('17.8.3까지)

*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수질배출·폐기물부담금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 **(열린연구 활성화)** 집단지성 등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 中企 R&D 역량을 지원·강화하는 '열린 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SNS 기반의 R&D 기술정보망 구축

* 과제 발굴시에도 국민대상으로 공모·발굴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R&D로 연결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Outsourcing)형 R&D 추진

* 집단지성이 SNS 통해 R&D 참여, 상시 브레인 스토밍, 비즈니스모델 기획 및 애로해결

□ **(융합R&D 장벽 해소)** 산업간, 기술간, 인문-산업간 융합저해 규제 중심으로 '2단계 기술규제 혁신방안' 수립

※ 1단계 기술규제 개선방안(`09.12월 제19차 국경위 보고)

○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구실 안전관리비 자율성 강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범위 완화, 유해물질 시험·분석 부담 완화 등 13개 과제

□ **(R&D 지원 강화)** 경기 불확실성에도 기업이 신기술·제품 등을 적극 개발하도록 R&D 지원 확대('11년 44,924억원 → '12년 46,148억원)

○ 그린카, 바이오 등 신시장 창출과 나노융합 등 산업융합 원천기술, 첨단 소재·부품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

* 산업원천기술(14,773억원), 녹색성장기술(11,523억원), 부품소재(4,191억원) 등

□ **(기술 보증 확대)** 담보 등이 취약하나 기술력·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집중 육성 위해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지원 활성화

○ 특허기술 등의 미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

○ R&D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수 R&D 과제들의 사업화 촉진 지원 확대(기보, '11년 0.9조원 → '12년 1.4조원)

- R&D 전단계*의 소요자금을 일괄심사 후 단계별로 보증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 도입('12년 1,000억원)

* 기술개발 → 사업화 준비 → 제품양산

나.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 국내 대학·공공硏의 우수 지식재산(IP)에 투자하는 창의자본* 조성,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 우수 지식재산(IP) 매입 후 부가가치를 높여 특허 매각 등으로 수익 창출

○ 민·관 합동의 지식재산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를 통해 '15년까지 IP전문펀드 등으로 창의자본 조성

- 매년 500~800억원 투자하여 IP매입, 권리화 등 IP인큐베이션 수행

※ 해외의 창의자본 조성 규모는 1~5조원 수준
* 민간주도형: 美 Intellectual Ventures(50억불), 英 Coller IP Capital(10억불), 이스라엘 요즈마펀드(33억불)
* 정부주도형 : 日 산업혁신기구(11억불), 中 중국투자공사(9억불) 등

-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우선 투자 유치 후, IP 전문펀드 조성(2~3개)을 통해 금융권 등으로 유치대상 확대

○ 창의자본으로 확보한 우수 지식재산의 실시권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 특허소송 위험 없는 사업화 적극 지원

* 창의자본 조성을 통해 소송비용 감소(400억원), 기업매출 증대(7,500억원), 기술수출(7,2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 기대

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 확대

* 기업자금사정지수(FBSI): 100('11.1/4) → 79('12.1/4)

□ 유동성 확대, 청년창업 촉진 및 성장유망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 108조원의 정책금융자금(보증 포함) 공급('12)

* 중진공(3.3조원), 정책금융공사(4.7조원), 기보(16.3조원), 신보(36.7조원), 산은(11조원), 기은(36조원) 등 (※기보·신보는 `12년 기금운용계획상 보증잔액기준)

○ 특히, 일자리 유지·창출에 적극적인 기업 지원 강화(8.4조원, 15.1%↑)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39세 이하) 창업에 민관 합동으로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2,100억원 규모)

○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기업은 단순 융자방식 탈피, 투·융자를 종합 지원(「투융자복합금융」 1,500억원 규모)

* 벤처캐피탈 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지방소재기업 지원 강화

□ 최근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 경기상황·자금 수급동향 등을 고려, 여타 다른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여 정책자금(시설자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적기 대응

* 2월 기준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이 작년 동기대비 55.5% (7,561억원) 증가